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30523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3-04-07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6-17



미 스텔 홈 즈

정 보 공 개 서

(주)미스터홈즈부동산중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미스터홈즈부동산중개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1544-0338

F A X : 02-556-0338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1544-0338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04, 2층 202호(삼성동, 씨티라이프61)

홈페이지 : www.mrhomes.co.kr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현황

※ 별 지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 가맹사업 **미스터홈즈**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 귀하 : 당사와 **미스터홈즈**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가맹희망자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주)미스터홈즈부동산중개			
영업표지	주 소			
미스터홈즈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04, 2층 202호(삼성동, 씨티라이프61)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	법인설립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6.02.01.	2016.01.22	고상철	1544-0338	02-556-0338
법인등록번호	110111-5954874	사업자등록번호	872-81-00272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법인만적기)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사내이사	(주)미스터홈즈부동산중개 고상철	미스터홈즈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04, 2층 202호 (삼성동, 씨티라이프61)		
			고 상 철	1544-0338	02-556-0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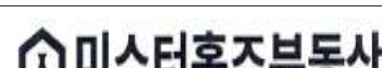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미스터홈즈	
상 호	미스터홈즈 OO 점	
상표/서비스표		등록 등록번호 4016774260000(2020.12.31)
		등록번호 4016774300000(2020.12.31)
		등록번호 4500657250000(2016.06.13.)
		제 09류 등 4개류 40-2023-0238408 2023.12.29 40-2229581 2024.08.02
		제 09류 등 4개류 40-2023-0238439 2023.12.29 40-2202467 2024.05.31
		제 09류 등 3개류 40-2023-0238423 2023.12.29 40-2202466 2024.05.31
		제41류 40-2023-0238428 2023.12.29 40-2209774 2024.06.17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187,258	63,265	123,993	46,171	-112,294	-110,201
2023년	468,594	297,399	171,196	184,320	31,269	47,202
2024년	482,770	1,127,619	-644,849	492,687	-818,831	-816,045

당사는 [미스터홈즈 브랜드]에 대해 2곳의 직영점을 운영 중이며 상기 매출액은 해당 직영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나.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의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업체/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고상철	사내이사	2019.05~현재	대표	회사경영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 원 수 (명)		직 원 수 (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0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해당없음			
특수관계인 (배우자)	해당없음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해당없음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해당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 등록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미스터홈즈	상표 서비스	2020.06.26. 출원 2020.12.31. 등록	출원 4020200109181 등록 4016774260000	(주)홈즈 컴퍼니	2030.12.31
 미스터홈즈부동산	상표 서비스	2020.06.26. 출원 2020.12.31. 등록	출원 4020200109188 등록 4016774300000	(주)홈즈 컴퍼니	2030.12.31
	상표 서비스	2016.01.15.출원 2016.06.13.등록	출원 4520160000428 등록 4500657250000	(주)홈즈 컴퍼니	2026.06.13
 MR.HOMES	상표 서비스	2023.12.29. 출원 2024.08.02. 등록	출원 40-2023-0238408 등록 40-2229581	(주)홈즈 컴퍼니	2034.08.02
 미스터홈즈	상표 서비스	2023.12.29. 출원 2024.05.31. 등록	출원 40-2023-0238439 등록 40-2202467	(주)홈즈 컴퍼니	2034.05.31
 미스터홈즈부동산	상표 서비스	2023.12.29. 출원 2024.05.31. 등록	출원 40-2023-0238423 등록 40-2202466	(주)홈즈 컴퍼니	2034.05.31
 미스터홈즈부동산	상표 서비스	2023.12.29. 출원 2024.06.17. 등록	출원 40-2023-0238428 등록 40-2209774	(주)홈즈 컴퍼니	2034.06.17.
상표권 부여기간	상표권등록만료일까지				

▶ 상기 상표와 서비스표는 귀하가 당사의 승인 하에 가맹점사업자로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입니다.

▶ 다만,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미스터홈즈] 가맹사업 현황

1. [미스터홈즈]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9. 6. 20 (최초가맹계약 체결일)

[미스터홈즈]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6.02.01

2. [미스터홈즈]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미스터홈즈부동산중개	미스터홈즈	고 상 철	2019.06.20 ~ 현재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04, 2층 202호(삼성동, 씨티라이프61)

3. [미스터홈즈]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미스터홈즈	부동산 중개	부동산 중개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미스터홈즈]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 역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 체	24	22	2	100	98	2	94	92	2
서 울	6	4	2	22	20	2	21	19	2
부 산	2	2	0	6	6	0	5	5	0
대 구	1	1	0	1	1	0	1	1	0
인 천	0	0	0	3	3	0	4	4	0
광 주	1	1	0	4	4	0	3	3	0
대 전	0	0	0	4	4	0	3	3	0
울 산	0	0	0	1	1	0	1	1	0
세 종	2	2	0	2	2	0	2	2	0
경 기	9	9	0	38	38	0	35	35	0
강 원	3	3	0	5	5	0	5	5	0
충 북	0	0	0	1	1	0	1	1	0
충 남	0	0	0	2	2	0	1	1	0
전 북	0	0	0	1	1	0	1	1	0
전 남	0	0	0	3	3	0	3	3	0
경 북	0	0	0	2	2	0	1	1	0
경 남	0	0	0	5	5	0	6	6	0
제 주	0	0	0	0	0	0	1	1	0

5. 최근 3년간 [미스터홈즈]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년	22	0	0	0	0	22
2023년	22	77	0	1	0	98
2024년	98	15	0	21	1	92

6. [미스터홈즈]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의 [미스터홈즈]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미스터홈즈] 이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해당없음						
특수관계인 (배우자)	해당없음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해당없음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해당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지역	2024 년 말 가맹점 수	2024년 연간 매출액(단위:천원, VAT미포함)						산출 가맹점 수
		연간 매출액 평균		연간 매출액 상한		연간 매출액 하한		
		연간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92	53,155	2,376	234,000	15,214	0	0	88
서울	19	72,511	4,265	234,000	12,500	0	0	17
부산	5	42,533	2,502	84,500	9,389	8,400	382	3
대구	1	5곳미만/6월이상 가맹점수 1곳						1
인천	4	5곳미만/6월이상 가맹점수 4곳						4
광주	3	5곳미만/6월이상 가맹점수 3곳						3
대전	3	5곳미만/6월이상 가맹점수 3곳						3

울산	1	5곳미만/6월이상 가맹점수 1곳						1
세종	2	5곳미만/6월이상 가맹점수 2곳						2
경기	35	51,691	1,960	213,000	15,214	3,450	181	35
강원	5	33,000	2,260	61,000	5,083	11,400	570	5
충북	1	5곳미만/6월이상 가맹점수 1곳						1
충남	1	5곳미만/6월이상 가맹점수 1곳						1
전북	1	5곳미만/6월이상 가맹점수 1곳						1
전남	3	5곳미만/6월이상 가맹점수 3곳						3
경북	1	5곳미만/6월이상 가맹점수 1곳						1
경남	6	34,055	1,514	63,000	3,150	12,932	392	6
제주	1	5곳미만/6월이상 가맹점수 1곳						1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포스테이터에 따른 매출액 입니다.]

[당사의 가맹점 중 영업일이 1년이 안 되는 가맹점이 있어 일평균 매출액을 산출한 다음 1년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6개월 미만 영업한 가맹점 및 매출액 파악이 안된 가맹점의 데이터는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기준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92 개	858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현재기준)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	-	-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	-	-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	-	-	-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전년도 기준)

당사에서 [2024년]에 [미스터홈즈]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2024.01~2024.12	635	318	318	-
광고	소계	-	635	318	318	-
	(비공개)	-	-	-	-	-
	(비공개)	-	-	-	-	-
	(비공개)	(비공개)	635	318	318	(비공개)
	(비공개)	-	-	-	-	(비공개)
	(비공개)	-	-	-	-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나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 상호	주소	전화번호
하나은행	전 지점	1588-111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사이트 이용방법은 사이트의 개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확인바랍니다.

항목		내용
하나은행 계좌가 있는 사업자	인터넷 뱅킹 이용시	① 인터넷뱅킹(www.kebhana.com) 접속 →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③ (기업뱅킹)클릭 → ④ 기업지원서비스(가맹금 예치제)클릭 → ⑤ (가맹점사업자 서비스페이지 바로 가기)클릭 → ⑥ 가맹본부명 및 사업자번호 기입 → ⑥ 가맹금예치신청서 내용 기입 후 예치가맹금 이체
	매장 직접 방문 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예치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 받아 보관
하나은행 계좌가 없는		하나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실행

사업자		
통장 개설시 필요서류	본인이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가맹계약서
	대리인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위임장 ④ 개인인감 증명서 ⑤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 하나은행에서는 가맹금예치에 관한 업무를 매장 방문으로 이루어지며, 하나은행 계좌가 있으신 사업자는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맹금을 예치 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계약체결 후 **가맹금 예치신청서**를 귀하에게 교부합니다.



귀하는 가맹금 예치신청서에 기재된 은행에 가셔서 **가맹본부의 계좌로 가맹금을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입금 내역은 당사로 등록정보가 전달됩니다.



귀하는 예치 후 하나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예치금 현황을 조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1.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조치내용
(주)미스터홈즈부 동산중개 외 1	의결(약) 제2024-005호 사건번호 2023가조1357	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사전제공 위반 (법 제7조 제3항)	2024.01.08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 교육이수명령)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미스터홈즈]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기타 기본공사 외 추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최초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인테리어, 설비/정착물 비용	가맹본부 또는 지정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변동 금액

가. 최초 가맹금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최초 가맹비	7,700	계약 체결과 동시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반환할 경우 미경과 잔여계약기간을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교육비	없음	계약 체결과 동시	교육 시작 10일전에 계약 해지	교육에 소요된 실제비용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합계	[7,700]				

나. 보증금

계약이행 보증금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계약이행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에게 채무 또는 귀책사유에 의한 배상책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1,000	계약 체결과 동시	-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 계약종료 후조치 (영업표지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반환 시 미지급 금액을 상계한 후 지급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아래와 같은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귀하가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날로부터 즉시 상환합니다.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의 미수금, 기타 홍보비 등의 미수금 및 손해배상금을 제외하고 반환

다. 예치 가맹금의 범위

귀하 또는 가맹점 양수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최초 가맹비	7,700
최초 교육비	없음
계약이행보증금	1,000(부가세 없음)
합계	[8,700]

라.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 1. 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6,700	1,670			10평 기준
인테리어	협력업체	11,000	1,100	공사5일전	공사 발주 전 계약해지	내부인테리어만 해당. 매장면적이 3.3㎡ 늘어날 때마다 1,100천원 비용 증가됨. 철거, 냉난방기, 전기증설 등은 별도
간판	협력업체	2,200	-	공사5일전	공사 발주 전 계약해지	매장면적이 3.3㎡ 늘어날 때마다 1,100천원 비용 증가되며, 기본형 전면간판 이외에 추가 간판설치가 있을 경우 비용 증가될 수 있음. ※간판 전면크기에 따라 차등 적용 (지주간판 별도)
집기/가구	자율구매	3,500	-	물품 공급 1일 이전	공급 발주 전 계약해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오픈시 초도물품	당사	오픈시 무상지원	-	-	-	최초 오픈시 셋팅되는 물품만 무상지원함.

※ 별도사항 : 점포임대 비용, 상.하수도 및 화장실 공사, 외부공사 및 철거, 냉.난방시설, 소방공사, 음향시설, TV, 전기/가스 증설, 오픈행사, 인.허가, 주방 후드, 닥트, 어닝, 외부테라스, CCTV 등의 비용은 별도입니다

※ 도표상의 해당 항목 금액은 기준 평수의 가맹점 오픈시 예상금액입니다.

※ 초도물품의 경우 규격/단위의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가맹점 오픈시 추가 수량에 관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위 표 항목(정보공개서 V-1 내역 중 거래상대방 강제항목은 제외)은 귀하가 직접 설치/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점포 내/외장공사를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직접 시공할 경우 추가 로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인테리어 공사 관련하여 가맹점 평면, 입면, 설계도면 제공비 및 감리대가로 총 가맹점 면적(등기부 등본상 면적)을 기준으로 220천원(VAT포함/ 3.3㎡기준)과 간판을 본사 또는 협력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하여 제작하는 경우 간판 기획관리비(디자인의 컨셉지정에 대한 대가)로 당사가 견적한 간판금액의 11%(VAT포함)를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7일 전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문의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와 상담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원하는 점포를 파악 → 가맹본부에 통지 및 협의 → 최적의 입지 도출 및 가맹희망자의 최종결정 → 가맹본부의 승인 ** 매장 평수는 상기 표(IV-1-라.)에 기재된 기준평수 이상으로 함.	당사

당사는 귀하가 점포를 선정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치장소, 통행인의 수, 지역의 특징,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매출 성향 등을 고려하여 귀하에게 조언할 뿐이며, 이는 해당입지의 법적, 구조적 가능성여부 및 매출과 수익 등 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의 책임과 결정으로 신중하게 점포의 설치 장소를 정하여야 합니다.**

바.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의 개점 전 교육과정 이수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만 20세 이상일 것
소속 공인중개사	당사의 교육과정 이수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만 20세 이상일 것
중개보조원	당사의 교육과정 이수	직무교육 수료증 소지자 만 20세 이상일 것

사.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일성 및 품질 및 성능이 인정된 물품과 설비 등이 필요하고, 사정에 따라 부득이 실제 물품 내역 및 공급업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상기 내역은 매장상황(평수, 구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점포 실측 후 계약체결 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가. 귀하가营业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 9.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당 사	월 330	익월 10일	월 단위 입금으로 반환 없음	영업표지,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사용대가, 경영지원 등의 대가로서 소멸성임	가맹사업을 위한 필요 또는 운영방침과 각 가맹점의 영업방식 및 혜택부여 등에 따라 로열티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광고 분담금	당 사	V-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참고	분담금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납부 후 1년 이내 실시하지 않은 경우	광고 집행 시 반환 안됨	가맹사업을 위한 필요 또는 운영방침과 각 가맹점의 영업방식 등에 따라 분담금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는 광고, 판촉비의 일부를 가맹점지원비로 부담할 수 있음
판촉 분담금	당 사		분담금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납부 후 1년 이내 실시하지 않은 경우	판촉행사 집행 시 반환 안됨	
교육훈련비	당 사	사전 통지	추후 공지	교육비 납부 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시행 후 반환 안됨	교육 필요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비용	협력업체	교체실비	간판 등 변경 이전	간판 변경 후 반환 안됨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직접 선정한 업체와 할 경우 해당 업체와 협의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 비용	협력업체	교체, 보수실비	교체, 보수 20일전까지 지급	교체·보수 후 반환 안됨 교체할 물품을 가맹본부가 구입한 경우 구입비용 반환불가		
점포환경개선 비용	협력업체	실비	VII-1. 점포환경개 선 시 비용지원 내역참고	교체·보수 후 반환 안됨 교체할 물품을 가맹본부가 구입한 경우 구입비용 반환불가		*직접 선정한 업체와 할 경우 해당 업체와 협의
영업중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	협력업체	구입실비	물품 결제시	홈즈몰 사이트 참고		영업 중 필요한 물품 구입은 (주)홈즈몰에서 운영하는 홈즈몰 또는 자율적으로 구매 가능함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액 X 연[15]%	지급기일 익일부턴	후불로 반환 없음		가맹계약서 제7조 적용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가맹사업을 위한 필요 또는 운영방침과 각 가맹점의 영업 방식에 따른 혜택 부여 등으로 상기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광고분담금은 일정비율로 청구하고 있으며, 교육훈련비는 가맹점 운영 중 원칙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특별교육에 한하여 필요시 사전통지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광고분담 기준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 및 사업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필요 시 부담분의 일부를 가맹점 (판촉)지원비로 사용합니다.

물품 발주 및 미수금 총당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중 동등액이 상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미수금 또는 연체금이 계약이행보증금의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발주 차단 및 계약 갱신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미수 또는 연체로 말미암아 발주 차단을 방지하고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하에 별도 조치(계약이행보증금의 증액 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의 설정)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금액 비율은 소수 둘째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작성)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4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를 수취한 바 없습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재고관리 감독내역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 기	비 고
각종 설비관리	가맹점사업자의 각종 설비관리 상태 점검	필요시 연 1회 이상	문 의: 당 사
접객 및 교육상태	직원 복장 및 매장청결상태, 고객응대방법 점검	필요시 연 1회 이상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필요시 연 1회 이상	
기 타	가맹본부의 운영지침 등 준수여부 점검,	필요시 연 1회 이상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해 필요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매출/회계처리 관련 등)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자료요청은 (서면, 이메일, FAX, POS, 발주 프로그램,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하기 위해서 별도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귀하는 당사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로열티와 광고분담금, 재계약 가맹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로열티 등의 미납과 연체 등에 의한 갱신거절과 해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총 계	없음				
재가맹비	없음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이 된 후 7일 이내 지급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해지 또는 미갱신된 경우	.	반환 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추가 교육비	실 비	추가교육 전 7일 이내	계약연장(갱신) 전 계약포기	교육에 필요한 실제 비용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나.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 계약관계가 유지됩니다. 다만,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가맹금은 가맹금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상이하며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단순히 세금 등의 사유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대표자 동일한 때)는 제외합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당사의 전적인 귀책사유에 의한 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비용으로 간판, 점포 내·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포스터 등 영업표지와 관련된 시설을 교체하며 이외 가맹본부의 책임과 비용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에 다른 요인이 경합되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부분 만큼 책임이 경감됩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가맹금은 가맹금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상이하며 가맹금 반환은 최초계약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이** 당사에 지급해야 할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내역	공급가액(천원)	부가세(천원)	총금액(천원)	비고
양수 가입비	양수인에게 받는 가맹비	1,000	100	1,100	
교육비	양수인 신규 교육	0	0	0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1,000	0	1,000	부가세 적용X

다만, 양수인이 잔여 갱신요구기간이 아닌 갱신요구기간(10년)을 새롭게 부여 받고자, **완전한 계약기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규계약에 준하여 **가맹비** 및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라.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의 상호, 간판 등 "미스터홈즈"임을 알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②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모든 금전채무의 즉시 상환
 2. [미스터홈즈] 브랜드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의 상징물의 제거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미스터홈즈]의 가맹점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행위의 금지
 3. 당사의 운영매뉴얼, 규정집, 지침 등의 자료 반환
 4. 당사의 소유물, 무상으로 제공한 물품의 반환
 5. 전화번호 등록(114 등록 및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및 기타 홍보사이트의 삭제
 6. 온/오프라인에서 "구)미스터홈즈" 또는 "전)미스터홈즈"라는 표현 사용금지
 7.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게 반환
- ③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로부터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잔존 채무 . 손해배상액의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제1항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④ 제①항의 철거 . 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합니다. 다만, 합의해지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매장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매뉴얼 등)를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⑥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⑦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물품의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공급받은 물품을 공급받았던 금액의 30%이내에서 반품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오·훼손이 심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경우 등은 반품이 불가합니다.
- ⑧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⑨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해지통보, 가맹점사업자의 사정 등)로 가맹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는 가맹점 오픈 당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해준 금액 (광고지원금을 포함한 모든 지원금) 및 감면해준 금액을 모두 가맹본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사로부터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잔존 채무. 손해배상액의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제1항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통일성과 명성유지를 위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 표에 기재된 규격(품질기준) 중 "매장별 상이"는 매장별로 사이즈 및 구조 등이 달라 통일된 규격이 없고, 가맹점사업자가 원하는 품질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포함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래형태를 권장하는 품목의 경우, 규격(품질기준)에 충족되는 품목에 대해 거래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브랜드명 입력의 통일성과 상품(용역) 및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상기 표에 기재된 내용은 당사의 경영상의 결정이나 거래관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정보공개서 변경기준에 맞추어 변경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위 표의 차액가맹금 수취여부에 따라 차액가맹금을 수취할 수 있으며, 당사가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귀하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당사가 수취한 직전 사업연도의 차액가맹금 규모는 정보공개서의 등록기준에 따라 산정되어 반영되었으며, 정보공

개서 [IV-2-나.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에 나와 있으니 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 . 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다)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미스터홈즈]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판매장려금)

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체의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나)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와 귀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영업이미지로 브랜드 충성도 및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당사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용역·서비스의 동질성 확보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귀하는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서비스를 판매/구성해야 합니다. 지정된 상품·용역·서비스를 판매/구성하지 않거나, 지정된 상품·용역·서비스 외 다른 상품·용역·서비스를 판매/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상품·용역·서비스를 무단 삭제하여서도 안됩니다.**

상품 · 용역 · 서비스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부동산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용역 · 서비스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또는 서면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계약기간 중 당사가 귀하에게 지정한 상품·용역·서비스 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경영환경의 변화 등 필요 시 기존 상품·용역·서비스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조에 따른 장비 및 집기 추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구입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상품·용역·서비스를 변경 및 추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해당없음	

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부동산 중개	국토부 중개요율표	사전 통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여부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양당사자가 합의한 가맹계약서 상 [별첨1]의 영업지역확인서의 내용과 표시에 의하며, 점포간 이격거리 [최소 0.5km]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양당사자의 합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당사는 영업지역을 구분하고 가맹점주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당사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주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 결정은 가맹점주가 하며 점포의 매출액 및 수익은 가맹점주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과 점포의 하자, 점포 개점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및 상가규약 등의 확인은 가맹점주의 책임임을 확약합니다.

가맹점주가 선택하는 영업지역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지도로 표시하여 첨부[별첨1]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타적 가맹점 운영권을 가지도록 합니다.

다만, 해당 영업지역 내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극장, 푸드코트, 시장, 지하상가, 역사 및 터미널 내 상가, 대학교 내,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상권(이하 "특수상권"이라 함)은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특수상권"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상권"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으로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상품 및 용역, 서비스 유통 사업을 할 경우 쇼핑몰, 홈쇼핑, 편의점, 마트,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의 가맹점 등 온/오프라인의 유통망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전항의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에 있어서 가맹점주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영업을 실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영업지역확인서에 표시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동일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지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이 절대적 또는 배타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가맹계약서 제9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지역에서 제외되거나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다른 브랜드인 경우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할 수 있고, 가맹점 사업자 간 영업지역이 중복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부동산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용역	미스터홈즈	해당 없음

나.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 점포 간 이격거리 최소 0.5km * 영업지역 내 특수상권(백화점, 대형쇼핑몰, 대형마트, 시장, 호텔, 리조트, 공항, 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지하상가, 대형병원, 관공서, 대학교 등)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영업지역이며, 특수상권의 영업지역은 특수상권 내로 한정됨	*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다.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따라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가맹본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 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라.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미스터홈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	-	-	-

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	-	-	-	-

마.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특수상권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되며, 가맹본부는 특수상권에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본부는 특수상권에 가맹점을 개설하는 경우 필요에 의해 해당 지역 가맹점사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직영점을 개설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해당지역 가맹점사업자의 요청과 합의에 의해 일정기간 운영 후 직영점을 해당지역 가맹점사업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특수상권"에 입점하는 경우, 해당 "특수상권"과의 입점계약에 따른 MD개편 및 퇴점조치 등의 문제는 가맹본부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투자비 회수 등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점포 철거 또는 점포 이전/리뉴얼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를 배려하여 1개월 동안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다른 점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은 잔여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기로 합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단위: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95%	5%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단위: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단위: %)
2024	0%	0%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가. 가맹계약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최초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이후 재계약(갱신)의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단,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의 미스터홈즈부동산 개설등록증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최초 계약결일 6개월 후부터 계약기간을 기산합니다

나.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다. 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 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다. 계약 갱신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3조 1항 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 1항 2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33조 1항 3호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3조 1항 4호
○ 당사의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3조 1항 5호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3조 1항 6호

라.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유는 가맹계약서 제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 및 34조의 사유로써 당사자 간 신뢰로서 가맹사업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에 걸쳐 2회 이상 상품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제26조 제1항의 각 사유 (34조 1항1호)
○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연속아님)	
○ 가맹점 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2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제10조 제13항에 의한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 .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1개월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34조 1항 2호
○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가맹점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1) 가맹점운영을 위한 각종 설비와 인·허가 등의 취득과 이행을 완료치 못한 경우 (개설등록증이 발급되지않는 경우 최대 6개월)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협력업체에게 지급할 금전의 지급을 완납치 아니한 경우 3) 기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개점이 연기되는 경우	
○ 계약서 제6조(가맹점운영권의 부여) 및 제7조(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4조 1항 3호
○ 계약서 제19조~제29조 및 32조 36조에 기재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4조 1항 4호
○ 계약서 제10조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4조 1항 5호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서 제16조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4조 1항 6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 및 누설하는 경우	34조 1항 7호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서 제30조 영업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4조 1항 8호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계약서 제3조 제2항 가맹점사업자의 요건 변동 시 가맹본부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34조 1항 9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협력업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계약체결이후 공급되는 설비, 집기, 상품, 원부재료 대금을 모두포함함)	34조 1항 10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예: 성추행, 폭행, 욕설 등)를 할 경우	34조 1항 11호
○ 계약서 제24조 가맹점 사업자가 물품을 직접조달 할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이 없이 직접 조달하여 사용 하는 경우	34조 1항 12호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약정한 상품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등, 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2월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가맹본부의 위반사항을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4조 1항 13호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34조 1항 14호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경우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브랜드) 이미지 훼손방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확보 및 투자에 관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상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개점 전 교육 방침을 위반하는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서 정한 위험관리 방침을 위반하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점포 점검 등에 대한 방침을 위반하는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 및 상품, 서비스의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8) 당사가 규정한 가맹점 운영의 주요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9) 가맹사업법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 등으로 계약서 또는 합의서 등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거절하여 작성하지 않는 경우 10)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11) 기타 당사와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12)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지 않는 경우	34조 1항 15호

○ 기간만료나 종료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4조 1항 16호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다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4조 1항 17호
○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아닌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하여 개점 전 및 계약기간 중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위약금 및 손해배상이 발생하며, 이는 계약서 38조 손해배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34조 1항 18호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본부의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발생한 경우	34조 1항 19호
○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고용인의 귀책사유로 고객에게 손해(위생, 폭력 등 모든 손해를 일컬음)를 끼쳤을 경우 및 그 사안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경우	34조 1항 20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에도 명기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을'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 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 14조 제 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4조 2항
○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정상태가 객관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합리적·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본부가 파산한 경우 2.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3. 가맹본부가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행정적 처분을 당한 경우 4. 천재지변으로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경우	34조 3항

바.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귀하와의 상호 합의 하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 가맹사업법의 개정 또는 기타 관련 업종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당사의 합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 본부에 통지) → 가맹본부 인지 및 검토 → 수정 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 동의 → 계약서 작성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동의 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한 날 또는 수정된 계약서에 기명날인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는 날로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등

가.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가 **없습니다**.

나.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등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당사의 승인이 없었던 경우 당해 계약은 당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승인조건은 아래 별도 기재)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영업 양도일 60일 이전)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서면 통지(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 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 권 이전 완료	문의 : 당 사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경영마인드 및 자금동원능력 및 자신의 직업적성이 반영되어 "본 계약"상 그 지위가 결정 되었던 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양도, 전대, 대리행사(영업의 양도 등)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하여 “양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도 등”에 앞서 “갑”에게 60일 전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에게 먼저 “양도 등”을 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맹점사업자는 매출액을 허위로 제공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책임지고 해당 손해도 배상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양도 등”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양도양수 승인 조건으로 양수자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며, 당사가 이 기간 중에 이유를 적시하여 거절하지 않으면 영업양도 등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사가 위 내용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 대상자는 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당사와 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양도절차를 이행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는 전항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영업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영업양수인에게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신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제11조의 최초가맹금(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신규계약 체결이 아닐 경우의 비용은 정보공개서 [IV.-3-다.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승인 전후를 불문하고 양도인의 투자비 내역, 영업 현황 등의 자료를 양수희망자 또는 양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 때, 가맹본부는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운영권이 양도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매장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매뉴얼 등)를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또한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대하여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가맹비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가맹본부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 대표자가 변경되지 않고, 기존 대표자가 실제 운영을 그대로 하는 경우
2.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재가맹비를 수취하지 않았을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승인 전후를 불문하고

양도인의 투자비 내역, 영업 현황 등의 자료를 양수희망자 또는 양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양도양수 시 영업설비, 시설물, 집기 등의 감가상각분과 향후 이에 대한 보충 및 필요비용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도금액이 양도인의 초기투자비용을 상회하는 등 양수인에게 현저히 불공정하고,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낮을 것이 명백하여 오히려 양수인에게 신규 개설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맹본부는 양도양수에 대하여 승인을 취소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과의 가맹계약은 종료되고,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가맹점의 양도양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책임과 결정에 의한 결과이며, 양도양수에 대한 당사의 승인이 양수 가맹점의 매출과 수익 등 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주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운영을 상속할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가맹본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의 상속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계약은 종료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이 종료되면, 피상속인이 당사에 지급한 이행보증금이 있는 경우 당사는 해당 이행보증금을 상속인에게 반환하고, 만약 피상속인이 당사 또는 당사의 협력업체에게 미지급한 물류대금 등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 이행보증금은 상계처리 하기로합니다. 또한, 잔여 채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는 상속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 대해서는 최초 가맹금이 면제됩니다. 단, 소정의 교육비, 기타 경비는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상속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가맹계약서 31조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60일 전 서면으로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가맹계약서 30조
업무위탁	불가능	-		

기타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서면에 의한 승인이 없는 한, 해당 가맹계약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전·대차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가.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일방적인 해지포함)에 따른 가맹계약 종료 후 1년 내 대한민국 전 지역 내에서 귀하가 [미스터홈즈] 브랜드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승낙 없는 경업금지는 그 효력이 없으며, 당사의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비슷한 인테리어디자인 및 브랜드 명의 사용을 하는 경우 이에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부동산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용역	1. 계약기간 중에는 경업 허가불가 2. 계약기간 종료 이후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 (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조건부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본부

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오전 10시 ~ 오후 07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 5일 이상, 월 20일 이상 점포를 개장하여 영업을 하여야 하나, 연속하여 3일 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휴업 7일 이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얻으면 됩니다. 또한, 휴업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협의하여 영업시간 조율가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3 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 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营业을 불가피하게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담당팀(또는 담당 슈퍼바이저)에 통지하시고 반드시 본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휴업일로부터 3일전에 이를 매장입구 및 SNS, 기타 각종 플랫폼 등에 게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 (중개사무소)의 종업원 및 근무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장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	-	-	-

라.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귀하는 가맹점 점포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점포의 위생 및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과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의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비고
서비스(Service)	담당자 매장 방문 → 서비스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1회 이상/1년	필요시
청결(Clean)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 이상/1년	필요시
회계 감사	담당자 매장 방문 → 회계장부나 POS검사 → 감사표 작성 → 가맹점 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 이상/1년	필요시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부담 기준

가맹본부인 당사는 기업광고와 '제품 등'광고 등을 총괄하며, 경영적 판단과 결정으로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으며, 판촉 행사의 시행, 비용 부담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국단위 광고/판촉 행사	브랜드 및 부동산 중개광고	광고· 판촉비의 50%	광고· 판촉비의 50% *가맹점주수에 안분부담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주의 사전동의(50%이상)→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 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행사 (전국행사) 분담비율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당사는 광고비의 일부를 가맹점 지원비로 부담할 수 있음
	브랜드 및 부동산 중개광고+ 가맹점모집 광고	광고· 판촉비의 50%	광고· 판촉비의 50% *가맹점주수에 안분부담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 판촉비의 100%	-		
가맹점 개별 광고 및 판촉	가맹점 개별&자발 적 광고 및 판촉	없음	100%	-	가맹본부에 판촉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30일 이내 승인여부 통지
판촉 행사	전국적인 판촉 행사	통일적인 홍보물 등의 디자인, 시안 등의 제작비용 등 은 당사가 부담함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 품·기념품·팜플렛· 전단 등의 홍보물 등의 비용은 가맹 점사업자가 부담	판촉행사 실시 전 계획안 공지 (1) 가맹점사업자 70% 이상 동의 시 → 전체 가맹점의 행사 참여 (2) 가맹점사업자 70% 미만 동의 시 → 동의한 가맹점 만 행사 참여 *다만, 별도로 사전 약정을 체결한 경 우에는 해당 가맹 점사업자만을 대 상으로 광고 및 판 촉을 실시할 수 있 습니다.	분담비율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맹점별 판촉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상동	

전국적인 광고 및 판촉활동은 당사는 물론 가맹점사업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는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그 약정에 따라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그 약정은 가맹계약과는 별도로 체결될 것입니다. 또한, 그 약정의 내용으로 아래 내용을 포함할 것입니다.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부담 비율
-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부담 한도

가맹본부는 전체 가맹점주 중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 전 동의를 얻어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때 동의한 가맹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당해분기에 지출한 광고비 중에서 각 가맹점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다음 분기 첫 달의 말일까지 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본인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자기의 비용으로 개별적으로 광고(매스미디어 및 SNS 포함)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사전에 광고 및 판촉에 관한 사항(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사용 이미지 등)을 가맹본부에게 통지 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맹본부는 30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광고 및 판촉비용을 부담하였을 경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2. 해당 사업연도에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별로 집행한 비용 및 "을"이 부담한 총액

가맹점사업자는 매장 내외부에 가맹본부가 제공한 창업, 가맹점 모집 관련 안내문 부착에 동의하기로 하며,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점포 및 영업설비/집기[간판, 인테리어, 주방설비, 집기, 초도물품 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개점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이하 영업설비/집기라 한다)] 등을 매스미디어(신문, 잡지, 도서, TV, 라디오, 영화, 유튜브 등)에 노출하거나, 노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서는 안됩니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일환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설정한 요건과 수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지역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광고, 선전의 소재와 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만약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개별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사는 이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에 판촉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30일 내 승인여부 통지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업비밀의 범위	기 간
당사가 제공한 매뉴얼 및 문서의 내용 중 당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취득한 가맹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	영업비밀 보호 의무는 가맹계약의 유지기간 동안은 물론 해지 및 종료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가.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가맹본부 및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및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34조(계약의 해지)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 운영을 일시적으로 폐업처리하거나 “미스터홈즈”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의무 불이행기간에 대해 1일당 금이십만원(₩200,000원)씩 위약금 및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최대한도는 금오천만원(₩50,000,000)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에게 계약서 제30조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을 양도한 경우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제3자에게 기존 조건을

그대로 양도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종료 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영업표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 또는 이용할 경우, 계약종료 익일부터 그 사용 또는 이용 종료일까지 손해배상금으로 1일당 금오십만원(₩500,000원)씩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서 제36조 (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 중 하나의 조항이라도 위반하는 경우,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금이천만원(₩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금이천만원(₩20,000,000)을 가맹본부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바.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이 계약체결 후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영업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상대방에게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 손해금을 지급하고, 실제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아래 각 호의 위약금 규정에 따라 위약별로 지급하기로 합니다.

1. 계약체결 또는 금전지급 후 영업개시 전, 가맹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해약을 요청한 경우는 예치금의 50%
2. 영업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가맹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해약을 요청한 경우는 예치금의 100%

사. 가맹점이 양도양수되어 양수자인 가맹점사업자가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영업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서 제38조 ⑥항에서 산정한 금액과 계약서 제38조 ⑦항의 금액(양도자 기준) 중 더 큰 금액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해지일 직전 12개월 월 평균 "갑"과 "을"간의 가맹거래로 인한 수익 X 10% X 잔여개월수

* 영업일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표의 "수익"에 해당되는 부분을 최초 오픈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월 평균으로 계산

* "을"의 정상적인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월(月)은 제외하고 15일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한 월(月)만 기준에 산입. 다만, 전체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 영업일로 일할 계산하여 월 평균으로 산정

* "갑"과 "을"간의 가맹거래로 인한 수익이라 함은 로열티, 물류수익, 판매수수료, 특수관계인의 경제적이익 등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을"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모든 수익을 통칭함

아. 계약서 제38조 ⑥항에서 [계약체결 후 - 개점 전]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인테리어가 진행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인테리어 업체에 지불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별개로 인테리어 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예정액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업자와 향후 협의하여 그 금액을 정하기로 합니다.

자. 계약서 제38조①항에서 ⑧항까지의 위약별 및 손해배상 이외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차.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서 제23조 및 제25조를 위반하여 가맹본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손해를 가맹본부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카. 계약서 제24조 가맹점사업자가 물품을 직접조달 할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이 없이 직접 조달하여 사용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금이천만원(₩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타. 가맹계약서 제34조 제 1항 제19호 및 제20조에 의하여 가맹본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손해액은 가맹본부의 피해 사실이 있는 당시 기준으로 손해의 정도를 파악하여 산정합니다.

MR. HOMES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약 **[6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60일 내외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 부담 금전지급 방법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60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10개 점포 현황문서 제공	D-60~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D-55~45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45~4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40	
가맹금 예치	- [하나은행]에 가맹금 예치	D-40(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39~37(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36(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35~5(3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40~10(30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간판, 별도공사 등 제외)**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점포의 면적과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오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위한 숙고기간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	비고
분쟁 발생 →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와 면담 → 당사 합의 또는 조정안 제시 → 합의 또는 조정안 수락 시 분쟁 종료	자율적 해결 원칙

상기와 같은 절차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당사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당사 부담 비용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당사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당사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 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 가맹본부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 가맹본부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신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의 지원내역

당사는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소양 서비스 마인드 기술적 지식 배양	영상 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개업하기 7일 이전까지 이수하여야 함	필수 교육
양수 교육	상 동	영상 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개업하기 7일 이전까지 이수하여야 함	필수 교육
정기 교육	상 동	영상 교육	분기 1회 이상	필수 교육
특별 교육	서비스, 종업원 관리 등 소집교육	영상 교육	교육실시 7일 전에 교육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필수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천원)	비고
신규 교육	20시간	무 상	최초 계약 시 이수
양수 교육	20시간	무 상	양수자 부담
정기 교육	필요시간(추후산정)	무 상	
특별 교육	필요시간(추후산정)	무 상	

[※ 특별교육은 개업 이후 교육으로 비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필요시 금액을 사전 통지합니다.
그 금액은 통상 교육에 필요한 실비수준입니다.]

신규교육은 [미스터홈즈]의 가맹사업 통일성(서비스 등)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상기에 기재된 기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위 기간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습득 정도가 낮거나 교육 참여도가 저조할 경우, 가맹본부가 정한 기준(서비스 등)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교육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충당합니다. 또한, 추가 교육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미스터홈즈]의 기준(서비스 등)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의 개점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교육내용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관리자, 종업원이 포함될 수 있음)

가맹점사업자가 정기 교육 및 부정기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교육비용은 실비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 이수 정도가 미흡하거나 참여 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가맹본부는 교육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때 연장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특별교육은 이를 실시하기 7일 전에 그 교육계획·장소와 시간을 수립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업이후 교육으로 최소시간이나 비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가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실비를 기준으로 교육비용을 산출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필요시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가맹본부에게 교육 및 훈련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운영, 관리하는 매장'이 아닌 해당 가맹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비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때 비용 산출 내역은 계약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위 표의 부담비용은 1개 매장 1인 이하 교육비용을 말하며, 숙박비용 및 교통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하며,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개점 후 가맹점사업자가 채용한 관리자(교육에 따라 종업원 포함)가 변경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관련 사실을 즉시 가맹본부에게 통지하고 변경된 관리자(교육에 따라 종업원 포함)가 계약서 16조에 의한 교육을 이수 받도록 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6조에 따라 개업 7일전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영업개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주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04, 2층 202호(삼성동, 씨티라이프61)
2	서울	분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3, 빌리브 아카이브 남산 1층 A108-1호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약43개월(3년 7개월)	직영점 2곳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운영6개월 미만인 곳 산정 제외)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05,842	2024년도 당사는 2개의 직영점(1개의 주사무소와 1개의 분사무소)이 있으나, 두곳 중 주사무소에서 2024년에 실제 발생한 직영점매출액은 0원이고, 분사무소에서만 매출이 발생하여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표지에 기재된)당사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 지

- | | |
|--------------------------|-----|
| 1. 매출액 증빙서류 | 별-1 |
| 2. 주요 품목 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 별-2 |
| 3.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직영점 현황 | 별-3 |
| 4.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 별-4 |

매 출 액 증빙서류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주요 품목 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공급품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상기의 상품 중 당사의 전용상품, 영업표지가 삽입된 제품, 가맹사업의 통일성 (맞)을 위한 품목은 강제함
- 상기의 공급상품은 상황에 따라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리스트와 거래상대방은 점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지 않고 본사에 단순히 통보만 하거나, 통보도 승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입하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당사의 초도 물품내역은 상기와 같습니다. 강제 물품 외의 품목은 자체 조달 가능하며, 협력업체에서 구입원하시는 경우 계약 시 협의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총 비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총수요일 대비 총수요량은 매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초도물품내역 외에 추가적으로 더 구입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총비용은 증가될 수 있고,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공급품목의 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된 금액으로 계약체결 및 공급(납품)시에 가격이 변경 되는 경우에는 납품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할 것입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서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현황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미스터홈즈]의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가맹희망자

주 소 :

전화번호 :

수령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수령장소 또는 방법 :

20 년 월 일

수령인 : (인)

가맹본부 : (인)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서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용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현황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미스터홈즈]의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가맹희망자

주 소 :

전화번호 :

수령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수령장소 또는 방법 :

20 년 월 일

수령인 : (인)

가맹본부 : (인)